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2022. 7.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적 의무사항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경남연구원(이사장 박완수, 원장 송부용)

나. 출연금액: 50,000천 원

다. 출연내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

라.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액: 100,000천 원

3. 기대효과

가. 우리 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설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나. 새롭게 수립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고성군 주요 행정계획에 반영되어 군정의 정책 기조로 활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9조

2)「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5)「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2

6)「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예상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 비목	소요 예산		비고
	산출 내역	금액(원)	
인건비 소계		**37,366,040**	
책임연구원	3,496,704원*1명*33%*8개월	9,231,290	
연 구 원	2,681,226원*2명*35%*8개월	15,014,860	
연구보조원	1,792,309원*1명*51%*8개월	7,312,620	
보 조 원	1,344,277원*1명*54%*8개월	5,807,270	
경비 소계		**5,300,000**	
회 의 비	전문가 및 연구진 (자문)회의 100,000원*5명*3회 = 1,500,000원	1,500,000	
인 쇄 비	디자인비 1,000,000원*1식 = 1,000,000원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5,000원*20부*1회 = 100,000원 5,000원*20부*1회 = 100,000원 5,000원*20부*1회 = 100,000원 최종보고서 30,000원*30부 = 900,000원	2,200,000	
여 비	연구진 출장비 40,000원*5명*6회 = 1,200,000원	1,200,000	
소모품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 50,000원*8개월= 400,000원	400,000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이내 / 2.0%**	**853,320**	
이 윤	**(순원가+일반관리비)의 10%이내 / 4.5%**	**1,958,370**	
총원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45,477,7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총액의 10%)**	**4,547,770**	
총용역비	(만원 단위 절사)	**50,000,000**	

※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붙임2 경남연구원 기본현황

❑ 설립목적

○ 경상남도 도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도정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경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연 혁

○ 1992. 7. 18.: 재단법인 설립 허가
○ 1992. 8. 5.: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992. 12. 10.: 경남개발연구원 개원
○ 2000. 3. 8.: 경남발전연구원 명칭 변경
○ 2019. 7. 15.: 경남연구원 명칭 변경

❑ 주요기능

○ 경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연구·개발 및 미래 첨단신기술 전략 연구
○ 지역개발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공급
○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관광·농어촌 분야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사·연구
○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및 국외 협력 강화와 관련 연구
○ 기타 연구원 고유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남연구원에 출연금(50,000천 원)을 지원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출연 동의안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

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

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고성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고성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